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20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긴급한 산림사업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절차 완화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4. 17.

다. 회 부 일 : 2025. 4.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북 북동부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산림 자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산림 복구 및 재해방지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나, 기존 법령상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산주 동의 없이 우선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통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

Ⅲ. 검토의견

1. 긴급한 산림사업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절차 완화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피해로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소유자의 주소불명 또는 우편물 반송 등 사유로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우선 산림사업을 시행한 후 산림소유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피해입목의 제거 등 긴급히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로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 ----- ----- ----- ----- -----. ----- ----- ----- ----- ----- ----- ----- -----

현행	개정안
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u>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u>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 ----- -----<u>우선 산림사업을 시행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u>----- ----- --. 1. <u>산림소유자의 주소지로 산림사업 시행 사실을 통지</u> 2. <u>제1호에 따른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30일 이상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산림청은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부터 민가,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연접한 산불피해지의 입목을 신속히 제거하는 ‘위험목 제거사업’(2023년 이전 긴급벌채)을 실시하고 있음.¹⁾

그러나 현행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산림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위험목 제거사업의 대상지에 대하여는 30일 이상 공고 후 산림사업을 실행하여야 하므로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은 긴급히 필요한 산림사업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후 통지(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이 산림소유자 동의 절차로 인하여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이미 현행법 제23조제4항제3호에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개정 2023.6.20.)하고 있는바,²⁾ 해당 조문에 사업의 실시 주체로서 국가를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조문을

1) 2019년~2024년 3,276ha 위험목 제거 사업 실시(대형산불 27건 발생)

- 2019년 928ha 2020년 709ha 2021년 18ha 2022년 1,361ha 2023년 230ha 2024년 30ha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3.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한 사업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명시하고,

산림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산물의 매각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즉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공탁·예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3